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45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허 영·박상혁·전재수

장철민 · 윤준병 · 위성곤

홍기원 • 한정애 • 임호선

김영진 • 박 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

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 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,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, 지역협력 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,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,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"를 "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의뢰하고,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역협력계획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상권영향평가서 및지역협력계획서"를 "지역협력계획서"로 한다.

제8조의2의 제목 중 "점검"을 "점검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"를 "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고받은 이행실적 결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을 한 자(이하 "대규모점포등개설자"라 한다)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.

- 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- ⑤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.
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보고 및 평가, 개선 권고, 공표, 이행명령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을 제8조의5로 하고,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3(이행강제금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

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·부과사유·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 하여아 한다.

- 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최초의 이행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있다.
- ⑤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대규모점 포등개설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 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
- ⑥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8조의4(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권영향평가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권 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·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
- 2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
- 3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4.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5. 그 밖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⑥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, 업무정지의 기준 및 방법・절차

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(이하 "대규모점포등개설자"라 한다)가"를 "대규모점 포등개설자가"로 한다.

제44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제52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보고·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실적을 점검한 지역협력계획서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	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
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	및 변경등록) ①
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	
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	
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	
을 시작하기 전에 <u>산업통상자</u>	제8조의4제1
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상권영
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	향평가서의 작성을 의뢰하고,
<u>획서</u> 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	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
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등	바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
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내용을	
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	
다.	
② 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	②
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	
받은 <u>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</u>	- <u>지역협력계획서</u>
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	
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	
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	
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	
을 요청할 수 있다.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및 이행실적 평가·점검) ① (생략)

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 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, 이행실적 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의2(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제8조의2(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·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----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보고받은 이행실 적 결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- ③ 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 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(이 하 "대규모점포등개설자"라 한 다)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 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정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- ⑤ 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

<신 설>

<신 설>

- 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기간 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.
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보고 및 평가, 개선 권고, 공표, 이행명령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의3(이행강제금) ① 특별자 치시장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 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대규모 점포등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 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을 부과・징수할 수 있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

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 과·징수한다는 뜻을 대규모점 포등개설자에게 문서로써 알려 야 한다.

- 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구청장 제1항에 따른 이행장 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행강제금의 금액·부과사유·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 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 하여아 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
 ·구청장은 제8조의2제4항에
 따른 최초의 이행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⑤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그 명령 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 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을 징수하여야 한다.
- <u>⑥</u>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

<신 설>

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규 모점포등개설자가 납부기한까 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제8조의4(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 등)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 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·시설 등 산업통상 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권영 향평가서 작성을 의뢰받은 대 행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

- 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4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 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
- 2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

 기초가 되는 자료를 5년간

 보관할 것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
- 3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

<u>제8조의3</u>(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 획 예고) (생 략)

제1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특별
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
의 개설등록을 한 자(이하 "대
규모점포등개설자"라 한다)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
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
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
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

추지 못하게 된 경우 4.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 반한 경우 5. 그 밖에 업무를 적정하게 수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 소. 업무정지의 기준 및 방법・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제8조의5(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 획 예고) (현행 제8조의3과 같 유) 제1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-----

소에	관한	사항을	지체	없이
알려여	야 하디	- .		

- 1. ~ 4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44조(청문) 산업통상자원부장 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1. (생략)
- 3. ~ 7. (생략)
- 제52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략)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(생략)

<신 설>

- 2. ~ 6. (생략)
- ④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청문)
1.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대행
<u>기관 지정의 취소</u>
<u>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
3. ~ 7. (현행과 같음)
제52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
과 같음)
3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준
수사항을 위반한 자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